	<b>대학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규정</b>		1/2
	규정번호	KTC-F-21	
	제정일자	2019.08.28	
	개정일자		
	관리부서	대학일자리센터	

## 대학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강원관광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·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 및 취·창업에 관계되는 종합계획수립 및 정책결정, 운영 검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기본 방향 수립
2.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대학일자리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및 취·창업 교과·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5. 기타,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목적과 관련된 사항


제 3 조 (구성) 위원회는 대학일자리센터장, 교학처장, 기획실장, 행정지원실장, 창업지원센터장, 취업지원센터장, 학생생활상담소장, NCS지원센터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, 정보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제 5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임기로 한다.

제 6 조 (회의소집과 의결)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3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	<b>대학일자리센터운영위원회규정</b>		3/2
	규정번호	KTC-F-21	
	제정일자	2019.08.28	
	개정일자		
	관리부서	대학일자리센터	

제 7 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업무관장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관장한다.

제 9 조 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 10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